

제과점영업, 독립 업종으로 분리 다시 찾은 주권으로 힘찬 비상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에 포함되어 있던 제과점영업이 따로 분리되어 독립 업종으로서 인정받게 됐다. 지난 12년 동안 제과인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업종 분리가 완성됨에 따라 고유 특성을 가지고 제과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다.

글 · 김영주 기자

휴게음식점영업에 포함되어 있던 제과점영업 업종이 드디어 따로 분리됐다.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독립 업종인 '제과점영업'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제과점은 '주료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하는 제과점영업 업종에 속한다. 이번 업종 분리는 지난 12년 동안 제과인이 고대하던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으로 제과업계가 더욱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제과업종은 1962년부터 1992년까지 독립 업종인 '과자점영업'으로 분류됐다가 지난 1993년 휴게음식점영업에 통합됐다. 1992년 당시 새롭게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등이 생겨남에 따라 판매하는 제품이 업종에 따라 정확히 구별되지 않고 식품접객업의 지나친 업종 세분화로 생겨나는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사회부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업종 통합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휴게실영업,

다방영업, 과자점영업 등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통합함에 따라 과자점영업이라는 독립 업종이 사라지게 됐다.

당시 31년간 독립 업종으로 존속해 오면서 날이 발전하던 제과업계는 이러한 개정에 반발하며 회원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1천2백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과자점 영업 존속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끝내 관철되지 못하고 결국 1993년 6월에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통합되는 비운을 맛봤다.

이로 인해 전문 기술인이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적인 업종이었던 제과업종은 성격과 영업형태가 전혀 다른 소비성 업종인 다방업 등과 함께 통합되면서 생산 업종으로서의 독립적인 발전이 근본적으로 차단됐다. 제과점 영업이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 접객업 등 복합적 특성을 가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휴게음식점영업만으로 분리해 제과점 운영 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했다. 즉 실정법상 과자점영업 업종을 삭제하고 휴게음식점영업에 '주료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는 표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적으로만 과자점영업을 인정해 행정상 규제나 정책에서 제과점 영업의 특성에 따른 사항을 건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세계 공통으로 독립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제과업종을 우리나라에서만 인정하지 않아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서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38년 동안 존속되고 있는 (사)대한제과협회가 과자점업종 삭제로 근거 없는 단체로 전락된 점에서 제과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제과업계에서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제과제빵에 대한 직종과 정의를 새롭게 제정하여 제과업종을 기술화, 전문화 된 직종으로 규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제과제빵 업종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과업계를 위해서는 독립된 업종이 필요하다

제294호 菓子會報 1992년 12월 31일(水曜日) (月刊) [7]

92 뉴스초점

식품위생법 개정과 본회의 움직임

4월 17일 한국식품연구소가 주최한 "식품접객업소의 안전한 방어를 위한 표준화"를 시작으로 각이 유본 식품위생 개정을 위한 연구사업이 업계에 일파의 여파를 일으켰다.

일본제이나시파인 개정과 관련해 음식재주 대외적 바에 나섰으나 갖가지 여러 가지 수적으로 관련된 직 장, 주인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는 여부였으며, 이때 중 나은 입법예고안은 정부 의 개정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다는 비판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제이나시파인 개정과 관련해 음식재주 대외적 바에 나섰으나 갖가지 여러 가지 수적으로 관련된 직 장, 주인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는 여부였으며, 이때 중 나은 입법예고안은 정부 의 개정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다는 비판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그렇나 다양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개정방안인 입법예고 당시의 그 목 순무상에서 많이 손질이 패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됨으로써 그나마 다행인데, 내년 6월까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정안 제하는 것에 대한 회원소통의 결

경과보고

16. 식품안전의 안전한 방진을 위한 표준의 제
18. 외식산업의 장려와 관련 표준의 반인 규정의 제
27. 보건사회부장관 앞으로 과자점영업 업종 존속의 당위성에 관한 건의서 제출.
- 서울시 과자 제빵 및 실무자들을 포함한 1차 건의이사회서 과자점영업을 존속시키기로 민중일치 의결
13. 2차 건의이사회 제
15. 전국지부장회의 제
27. 입법예고
31. 서원운동 결의
11. 탄원서 제출
13. 정부헌정기념일삼포자리 봉사부조 파이던 조사 처분 촉구 표시하였다는 회신 도자.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통합될 당시 (사)대한제과협회의 활동사항과 회원들의 시위 장면이 담겨져 있는 1992년도 과자회보 기사.

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에 (사)대한제과협회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과업종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업종 분리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 2002년부터 김영모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제과인들의 오래된 염원인 '제과업종 독립'을 숙원사업으로 삼고 관계 부처와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독립 업종으로 제과점영업 업종을 되찾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이번 업종 분리로 인해 제과점은 독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 구조적으로 막혀 있었던 정부와의 협의 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각종 행정 규제나 세법, 법률상에서 제과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직접 건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종의 혼돈 상황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과업계 전체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자긍심을 갖게 됐다.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은 "13년 동안 업종도 없는 미아였던 우리 제과업 숙원사업이었던 업종을 되찾았다"고 감격스러워 하며 "앞으로 우리 업종의 특성을 살려 각종 행정 규제, 세법 등과 관련해서 정부와 교섭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텃다. 그

동안 업종 분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업종 분리는 1992년 이전과 달라진 시대적 상황을 적극 반영해서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해 제과점에서 빵, 떡, 과자 등을 판매함과 동시에 부가적인 제품인 아이스크림 제품류, 빵에 가까운 패스트푸드, 빵 등과 함께 마실 수 있는 커피, 홍차 등 음료수의 조리·판매가 가능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유지된다. ☞

■ 2000년 이후 본격적인 업종 독립 활동 사항

2001년 6월	보건복지부에 제과제조판매업의 업종 신설 건의서 제출
2002년 8월 20일	국회의원 김성순 의원에게 의정자료 협조
2003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
2004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
2005년 2월 18일	제과업종재분류 건의
2005년 3월 31일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5년 4월 12일	제과업영업 개정(안) 수정 건의
2005년 7월 28일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비교

기존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 마. (생략)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 6. (생략)

7.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및 동호마목의 위탁급식 영업

②(생략)

개정안

1. ~ 7. (현행과 같은)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나. ~ 마. (현행과 같은)

바.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 6. (현행과 같은)

7.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동호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동호바목의 제과점영업

②(현행과 같은)